

# 공 시 송 달 공 고
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08.09.08.



- 1. 공고제목 :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
- 2. 처분근거 :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
- 3. 처분원인 : 불법현수막 부착
- 4. 처분대상

대 상 자			위반내용 (불법벽보부착)	과태료 부과금액	반송 사유	비고
납세자	주민번호	주 소				
문학실	750217-1*****	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36-8	주말농장 (031-442-3728)	1,080,000원	수취인불명	
양대현	691002-1*****	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564	전세보증금대출 (010-8783-3133)	150,000원	이사	
김철두	560316-1*****	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412 건영빌리지 가동 301	하수구 악취 해결 (010-6353-9041)	70,000원	수취인불명	
곽진국	770222-1*****	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97-1	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(031-737-0707)	150,000	폐문부재	

- 5. 공고기간 : 2008.09.08 ~ 2008.09.23 (15일간)
- 6. 게시장소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- 7. 문의사항 : 광주시 건축과 주거환경팀 (☎ 031-760-2906)

※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